

「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월 8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 · 강승수 · 김민성 · 김영길 · 김영태 ·
김원섭 · 김재우 · 김정도 · 김춘남 · 박교상 ·
박세채 · 소진혁 · 신용하 · 안주찬 · 양진오 ·
이명희 · 이상호 · 이지연 · 장세구 · 정지원 ·
추은희 · 허민근 의원 (22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월 17일

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여,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

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, 제16조의2, 제33조의2, 제34조
 -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1조, 제2조, 제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- 현재 상위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「생활체육진흥법」에서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·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도내 최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.
-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근로여건을 파악하여, 근로시간 등에 따른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기준 마련 등 관련 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하며 수당인상 및 호봉제 도입은 경상북도 지침에 따라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